

# 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 의 결

의안번호 제2020 -321호

의 안 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7) -귀농·귀촌 사업 지원절차 개선-」

대상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의 결 일 2020. 7. 20.

## 주 문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7) -귀농·귀촌 사업 지원절차 개선-」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림청장에게 권고한다.

##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7월 20일

위원장 전 현 희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김 기 표

위 원 김 태 응

위 원 김 의 환

위 원 강 재 영

위 원 황 성 주

위 원 홍 인 옥

위 원 윤 영 훈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위 원 이 근 동

위 원 박 흥 규

<별지>

---

#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7) - 귀농·귀촌 사업 지원절차 개선 -

---

2020. 7.



국민권익위원회

# ☐☐ 목 차 ☐☐

I. 추진 배경 및 경과 .....	1
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	3
①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자격 완화 .....	3
② 어선중개업 교육수요자 편의 강화 .....	7
③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간소화 .....	11
III. 조치사항 .....	14

# I. 추진배경 및 경과

-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 국정과제 : 83.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조성/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정책강화
- ❖ 규제혁신 : 농림어업산림분야 일자리창출 규제혁신 및 민생부담완화

## □ 추진배경

-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전원생활을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귀농·귀촌 흐름이 꾸준히 증가 추세
  - ※ 은퇴연령층의 증가 : ('16년) 744만명 → ('21년) 882만명으로, 향후 5년간 귀농·귀촌 인구 증가세 유지예상(약 18.5% 증가추정)
  - \*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부머세대는 현재 은퇴기를 맞았으며 노후준비와 전원생활등을 이유로 귀농추이 증가
-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농촌인구가 줄고있는 상태에서 도시민의 농촌유입은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고, 농업의 인적 자원 확보차원에서도 귀농·귀촌인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
- 이에 정부는 귀농·귀촌 주민에 대한 정보제공·귀농교육·농지·주택마련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 ※ 귀농창업자금 : ('17년) 2,000억원 → ('18년) 3,000억원 → ('19년) 4,572억원
- 하지만, 귀농·귀촌인 상당수가 정부지원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원자격·절차 복잡, 정보획득 어려움, 지원금액이 적음 등의 문제를 제기

※ '19년 귀농·귀촌 애로사항('20.2.농림축산식품부 실태조사)

- ① 지원자격·절차가 복잡(31.6%), ② 정보획득이 어려움(27.35), ③ 지원금액이 적음(14.7%)순

- 이에 이들의 귀농·귀촌 정착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여, 정착지원 자격조건 완화 및 지원절차 간소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한 제도개선을 추진

※ 개선과제 발굴원 : 국민콜110,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국민제안 등

## □ 추진경과

-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 '20. 6월
- 방안마련 및 기관협의 : '20. 7월
- 위원회 안건상정·권고 : '20.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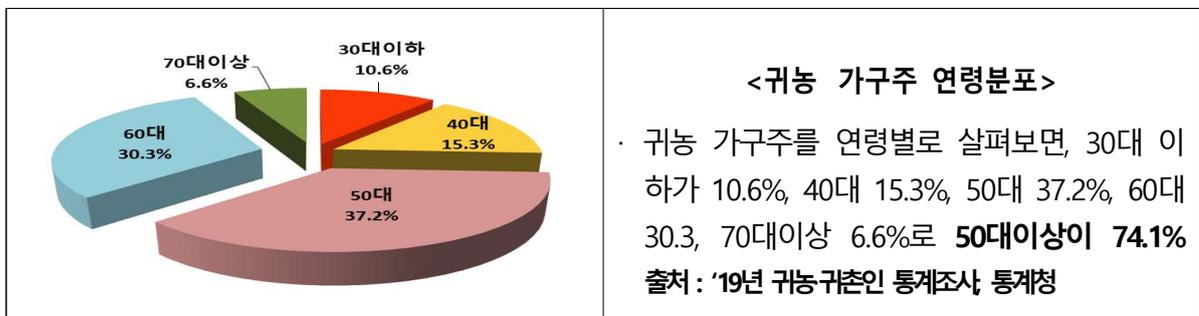
##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자격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 □ 현 황

- '19년 귀농인 평균연령은 55세로 50대가 37.2%를 차지하여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60대가 30.3%로 50~60대가 67.5%를 차지



- (지원·운영) 정부는 현재 창업자금 및 주택자금 융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체류형 농업창업센터\*(전국 8개소)도 운영  
\* 예비귀농인에게 주거지를 제공하여, 지역에서 직접 살아보게 한 뒤 귀농귀촌을 유도
- (사업) 농업발전을 이끌어갈 유망한 예비 농업경영인을 발굴하고 교육·컨설팅·영농자금 대출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후계농업경영인(후계농) 육성사업」을 시행

※ 신청연령과 영농경력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① 후계농과 ② 청년창업형 후계농으로 구분하여 신청서 접수 후 선발

구 분	신청연령	독립영농경력	신청(접수)방법
후계농	만18세~만50세 미만	영농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 농업기술센터 서면접수
청년창업형	만18세~만40세 미만	3년 이하 (독립경영예정자 포함)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통한 온라인 접수

### <후계농 육성 사업>

- ▶ **(목적)** 창업 후계농의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돕기 위해 개별 경영체의 맞춤형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지원
- ▶ **(재원)**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10년 분할상환
- ▶ **(자격요건)**
  - 연령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만 18세이상 ~ 만 50세미만인자**
  - 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청년창업형 후계농 육성 사업 지원>

- ▶ **(목적)**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
- ▶ **(자격요건)**
  - 연령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만 18세이상 ~ 만 40세미만인자**
  - 경력 : **독립경영 3년이하**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 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자

▶ **(지원내역)**

구분	지원 1년차	지원 2년차	지원 3년차	합계
독립경영 1년차	100만원(12개월)	90만원(12개월)	80만원(12개월)	3,240만원 (36개월)
독립경영 2년차	90만원(12개월)	80만원(12개월)	-	2,040만원 (24개월)
독립경영 1년차	80만원(12개월)	-	-	960만원 (12개월)

## □ 문제점

- 현재 후계농업경영인은 **만 18세이상~만 50세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연령, 영농경력, 교육실적을 충족하여야 **융자금 신청이 가능**

- 실태조사결과, 귀농연령층 중 50대 이상이 70%가 넘는 상황에서  
 용자금 신청시 만 50세미만의 연령제한은 실질적 정책수요자인  
 50대이상 귀농인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존재
- 반면, 유사 사업인 임업인 후계자 사업의 자격요건은 만 55세미만의 자를  
 대상으로 하며, 임업분야 교육이수 시 연령제한 없이 용자금 신청 가능

**<임업인 후계자 자격요건>**

- ▶ (목적)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해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자의 지원을 통해  
 임업창업 활성화
  - 자연환경에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자 귀촌하는 도시민
  - 농산촌으로 들어가 창업하는 청년 임업인
- ▶ (혜택) 산림경영에 필요한 각종 세제감면, 산림조합의 저금리 융자·기술지도,  
 각종 국고보조사업 지원 등의 혜택
- ▶ (자격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임 업 후 계 자	① ② ③ 중 택일	① 55세 미만인 자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 영하려는 자로 - 개인독립가의 자녀 -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 소유 포함)하고 있는 자 -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②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10,000㎡)이상에서 단기소 득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
		③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10,000㎡)이상에서 단기소 득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교육이수: 임업분야 40시간 이상 이수한자. 단, 임업관련 대학· 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해 면제 -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임업후계자등의 육성)

### 【국민신문고】

- 만 51세인데,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되어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싶은데, **나이제한으로 신청을 못함. 임업후계인의 경우 교육만 이수하면, 나이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는데, 후계농업경영인 역시 제한연령 완화필요** (20. 5월)
- 만 50세가 넘어가면, 후계농업인으로 선발을 못 받는 것이 이해가 안됨. 청년창업농을 따로 선정하여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50대를 위한 후계농사업도 필요** (20. 4월)

### □ 개선방안 [조치기한 : 2021. 6.]

- 후계농업경영인의 나이제한을 '만 50세미만'에서 상향하여 더 많은 예비귀농인이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개선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반영

## 2 어선중개업 교육수요자 편의 강화

[해양수산부]

### □ 현 황

- 해양수산부는 어선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선거래시 과도한 수수료 부과, 불성실 중개, 중개를 빙자한 사기 등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16년부터 어선거래중개업 등록제도\* 신설·운영하고 있음

※ 「어선법」제31조의 2(어선중개업의 등록 등)

#### 【어선거래중개업 등록제도 개요】

- ▶ **(목적)** 어선중개업 등록요건을 갖춘 전문중개인을 양성하여 어선거래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어업인의 편익증진 도모
  - \* 어선거래중개업등록현황 : **295업체**등록('20.5월말기준)
- ▶ **(자격요건)** 어선중개업 등록을 위해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① **필수 교육이수 및 시험합격** ② **중개사무소 확보** ③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등록**
- ▶ **(등록의무)** 어선중개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어선중개업을 한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선중개업을 등록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어선법」 제31조의7(벌칙)

- 해양수산부는 어선의 공정하고 편리한 거래를 위해 어선거래업자 등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어선거래를 하고자 하는 매도자와 매입자를 연결하는 어선거래시스템(www.어선거래.kr)을 운용

< 연도별 어선거래시스템 접속현황 >

구분	계	'19년	'18년	'17년
접속(건)	240,366	177,263	46,844	16,259

- 어선중개업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규교육과, 기존 어선 어선거래 중개업으로 등록된 중개인을 대상으로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

※ 신규교육(21시간) : 교육을 이수 후 시험을 거쳐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취득

※ 보수교육(6시간) : 해마다 개정되는 어선법의 개정 내용 및 계약실무와 분쟁 실무 등을 다루는 교육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 신규교육과목 >

구분	교과목	세부과목	시간
신규교육	어선중개업 제도	어선중개업자의 법규해설	1
		어구어법 등 어업의 이해	3
		수산업 및 어선법령	5
	어선중개업실무	중개거래 관련 분쟁 민·형사 실무	2
		거래계약의 이해·법규실무	2
		자산가치 평가실무	2
		어선거래시스템 모의 실습	1
	직업윤리 및 소비자 보호	중개업자의 사회적 책임	2
		계약당사자 보호 및 구제방안	2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	1

※ 어선중개업제도, 어선중개업실무, 직업윤리 및 소비자 보호 총 3과목 평가, 각 과목 40점이상, 평균 60점이상 득점시 어선중개업 등록증 취득가능

< 신규교육일정 >

구분	계	회차	'20년
신규교육	어선중개업을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	1회	2020.05.26~05.29
		2회	2020.07.07~07.10
		특별	2020.09.15~09.18

< 보수교육일정 >

구분	계	회차	'20년
보수교육	자격증 취득 후 매 2년마다 보수교육 * 2년경과시 과태료 부과	1회	2020.5.14
		2회	2020.5.15
		3회	2020.6.12
		4회	2020.7.17
		5회	2020.10.23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http://www.어선거래.kr>), 선착순 마감

※ 교육방법 : 집합교육(부산해양수산교육원)

□ 문제점

- 현재 어선중개업 등록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신규교육이 부산해양수산교육원에서 집합교육으로만 이루어짐
- 신규교육은 4일간 21시간을 이수하는 집합교육형태인데, 교육 미이수시, 시험응시와 어선중개업 등록이 불가하며,
- 신규 및 보수교육의 경우, 당초 3~4월 일정의 교육을 코로나19 진정 이후인 5.14일부터 집합교육으로 소집

< 연도별 어선중개업 교육 이수 현황 >

연도	구분	수강자(명)	이수자(명)
'17년	신규교육	347	314
'18년	신규교육	213	192
'19년	신규교육	163	146
'19년	보수교육	157	157

※ 보수교육은 '19년까지 부산해양수산교육원에서 교육하다가, '20년부터 대전예람인재교육센터서 실시

- 이처럼 신규교육을 부산해양수산교육원에서만 시행하면서 타지역 소재 어민들이 생업 등을 이유로 교육참석에 어려움을 호소
- 또한 보수교육 역시 5회 모두 집합교육만 시행하여 온라인교육 도입의 필요성 제기

**< 국민신문고 >**

- 어선중개업자가 되려면 며칠동안 부산에서 교육받아야된다고 하니 포기할 수 밖에 없음. 부산에서 하루도 아니고 며칠간 교육을 받는 것은 인천 등 수도권에서 고기를 잡는 어업인들에게 어선중개사등록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임(19.5)
- 어선중개업자는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는데, 1일 집합교육으로만 이루어짐. 수강자들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교육을 도입하면 좋겠음(19.5)

**□ 개선방안 [조치기한 : 2021. 1.]**

- 어선중개업 교육기관 확대로 교육수요자 접근성 개선
  - 코로나 19예방과 이용자 편의차원에서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 병행검토
- ⇒ 「어선중개업 교육기관의 교육시행 규정」에 반영

### 3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간소화

[산림청]

#### □ 현 황

- 최근 귀농·귀어에 이어 약용작물 재배 및 바이오연료 등 생산 임업 농가가 증가하면서, 귀산촌 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
- 산림청에서는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제도\*를 운영

\* 임업경영체 등록: 임업인 소재지, 면적, 경영형태, 품목 등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며, 임업경영체로 등록시, 산림조합원·농협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각종 세제 혜택 등을 위한 자격증명에 활용

####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

▶ **(등록대상)** 지목이 임야인 생산수단을 가지고, 육림업, 임산물 생산 및 채취, 종자 및 묘목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 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밤, 잣 제외)·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밖의 임산물: 1천㎡ 이상
- ②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산나물류·분재: 300㎡ 이상
- ③ 밤나무: 5천㎡ 이상
- ④ 잣나무: 1만㎡ 이상
- ⑤ 표고자목: 20㎡ 이상
- ⑥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 **(등록혜택)** 각종 세제혜택\* 및 임업인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사업의 증빙자료로 대체  
\* 비료·농약 등 농자재 구매시 부가가치세 완전 면제. 임업용 면세유 구입가능.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50%이내 감면

▶ **(등록방법)**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경영주인 농업인이 주민등록소재지 지방산림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신청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 문제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하는 농업경영체등록서의 경우 온라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나, 산림임업경영체 등록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지방산림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 방법으로만 등록
    - 민원처리를 위해 지방산림청(전국5개) 방문시 신분증 및 경영정보를 증빙할 서류를 가져오지 않아 재방문하는 사례 빈번
    - 특히 지방산림청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민원인의 직접 방문에 따른 시간과 비용발생
- ※ 절차 : 신청서 접수→ 시스템 등록 →현장조사→경영체 등록 및 확인서 발부
- ※ 신청접수 후 30일의 처리기간 소요(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기관 및 관할구역>

기관	관할구역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춘천시·원주시·홍천군·횡성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강원도 강릉시·동해시·태백시·속초시·삼척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고성군·양양군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부산시, 대구시, 울산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창원시·김해시·밀양시·양산시·함안군·창녕군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대전시, 세종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광주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진주시·통영시·사천시·거제시·의령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제주도

※ 농업경영체등록서는 에그릭스([www.agrix.go.kr](http://www.agrix.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

## 【애그릭스 농업경영체 등록화면】



## 【국민신문고】

- 임업경영체 등록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드시 산림청에 방문을 해야하는데, 농업경영체 등록처럼 온라인으로 필요서류를 등록하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 문서24를 통해 공문도 접수를 받는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음 ('20. 5월 )
- 건강보험공단에 임업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내기위해 임업경영체를 등록하려는데, 지방청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 발급만이라도 온라인상으로 민원24에서 가능했으면 좋겠음 ('20. 4월)

### □ 개선방안 [조치기한 : 2021. 12.]

- 임업경영체 신청서류제출·접수·등록 등을 온라인방식으로 할 수 있는 등록정보시스템 마련

⇒ 「산림청 임야대상 농어업경영체등록 운영(안)」에 반영

### Ⅲ. 조치사항

□ 대상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과제명	조치사항	소관기관	조치기한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자격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계농업경영인의 나이제한을 '만50세미만'에서 상향</li> <li>☞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반영</li> </ul>	농림축산식품부	'21.6월
어선중개업 교육수요자 편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선중개업 집합교육기관 확대로 교육수요자 접근성 개선</li> <li>○ 코로나19예방과 이용자편의 차원에서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 병행검토</li> <li>☞ 「어선중개업 교육기관의 교육시행 규정」에 반영</li> </ul>	해양수산부	'21.1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업경영체 신청서류 제출·접수·등록 등을 온라인방식으로 할 수 있는 등록정보시스템 마련</li> <li>☞ 「산림청 임야대상 농어업경영체 등록 운영안」에 반영</li> </ul>	산림청	'21.12월